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THE **EST**

춘천 | 동문 디 이스트

어 반 포 레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5.08.18.(월) ~ 2025.08.20.(수) 3일간
제출 장소	‘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’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-6)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‘상세’로 발급하여야함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‘주민등록번호’ ‘세대주성명및관계’ 및 ‘주소변동이력’ 등 모든 항목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아래 서류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4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동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)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‘상세’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” 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 표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 선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직계비속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함) ※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※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직계비속	• 본인 만 19세 미만인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• 자녀 만 18세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 제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증명서류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 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
전세파해자 제출서류	○	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매각허가결정경매,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) •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경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* (예시) 경매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배분계산서 등
부적격 소명자료	○	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“소형·저가주택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